

권선113-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정정 고시

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817-72번지 일대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원시 고시 제2009-9호(2009.01.12.) 정비구역지정 결정되고 2009.08.25.에 조합설립인가 되고 수원시 고시 제2012-156호(2012.06.18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되고 수원시 고시 제2018-173호(2018.06.08.)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되고 수원시 고시 제2019-1700호(2019.08.21.)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된 권선113-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4조 및 78조 규정에 의거 수원시 고시 제2022-521호(2022.12.07.), 제 2022-524호(2022.12.08.)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한 내용에 아래와 같은 정정사항이 있어 내용 정정 후 고시합니다.

2022년 12월 15일

수 원 시 장

○ 정정사유 : 5.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> 마.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중 주택규모 101㎡의 공급 세대 수 오기로 인하여 정정하는 사항임.

○ 정정내용

5.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

마.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

공급대상	주택규모별(전용면적기준) 공급세대수													상가 면적 (㎡)	그 밖의 건축 시설 면적 (㎡)
	계	39㎡	48A㎡	48B㎡	59A㎡	59B㎡	59C㎡	59D㎡	71A㎡	71B㎡	84A㎡	84B㎡	101㎡		
계	2,178	156	69	13	83	187	264	3	352	60	847	60	84	3,713	
토지등소유자	767	-	47	4	83	125	156	3	155	14	155	2	23		
보류시설	21	-	-	-	-	-	-	-	1	1	16	-	3		
일반분양	1,234	-	22	9		62	108	-	196	45	676	58	58		
임대	156	156	-	-	-	-	-	-	-	-	-	-	-		

소관부서	도시정비과	담당자 직.성명	주무관 박은경	전화번호	031-228-3637
------	-------	-------------	---------	------	--------------